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명·제1조·제2조)

나. 면 기관 명칭 변경함(안 별표)

- 1) 웅양면사무소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 2) 고제면사무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3) 북상면사무소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 4) 마리면사무소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 5) 남하면사무소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 6) 신원면사무소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 7) 가북면사무소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군·읍·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u>군·읍·면사무소</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u>거창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u>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u>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응양면 행정복지센터 응양면 사무소	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